

#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167
----------	-----

발의일자 : 2003년 10월 일

발 의 자 : 박용갑의원외 17인

## 1. 제안이유

- 그동안 의장과 부의장 선거시에 투표용지에 직접 선출할 자의 성명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였으나
- 이로 인해 무기명 투표의 근본취지(목적)인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을 우려와 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무효투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표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표방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며
- 누구를 선택하였는지 식별이 곤란한 투표지에 대한 무효여부의 판단은 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” 제179조(무효투표)의 규정을 준용하는 등 투표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함.
- 아울러 의안의 상정은 『“집회공고일이전”에 제출된 의안을 원칙으로 한다』 라고 규정되어 있어 의안의 검토기일이 촉박하여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“집회공고일 이전”을 “집회일 10일전까지”로 하여 의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고
- 시정질문요지서의 집행기관 도달시기가 늦어도 “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”로 규정되어 있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이를 늦어도 “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”로 개정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.

## 2. 주요골자

- 의장과 부의장 선거시에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“○”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효투표의 판단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관련규정을 준용토록 함(안 제8조제5항).
- 의안의 상정은 “집회일 10일전”까지 제출된 의안을 원칙으로 함(안 제57조의2).
- 의장은 시정질문요지서를 늦어도 “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”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함(안 제73조의2 제7항).

## 3. 관련법령

- 지방자치법 제63조(회의규칙)
- 대전광역시법제사무처리규정 제17조(제출기일)

##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제1항 선거시에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"○"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(무효투표)를 준용한다.

제57조의2중 “집회공고일이전”을 “집회일 10일전”으로 한다.

제73조의2 제7항중 “질문시간 24시간전”을 “질문시간 48시간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